#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및 부산 유치 근거 검토

('26.05.15., 글로벌금융중심지팀 안남현, 주채희)

▸ 퇴직연금기금화 및 기금운용기관 설립은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안(2025.9.23. 한창민 의원) ② 퇴직연금공단 법안(2025.9.1. 안호영 의원)의 형태로 입법 논의 중

▸ 노사정 TF(2025.10월 발족) 는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공동선언문 발표('26.2.6)<참고2>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에 합의

▸ 이에 따라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여 '26년 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추진을 발표('26.3월)함에 따라 관련 법률 제·개정 동향의 모니터링 필요

## □ 퇴직연금공단 법안(안호영의원안) 주요 내용

### ○ 퇴직연금공단 설립

- 업무 : 퇴직연금제도 관리·감독 지원, 퇴직연금제도 관련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퇴직연금사업자 관리 지원,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등

-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을 위해 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음

-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복지사업(자금의 대여, 퇴직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음

- 임원 :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

*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급여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함

- 수입 :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차입금*, 잉여금**

* 사업을 위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 차입 가능

** 결산상 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적립

- 승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일체와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제17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연구센터 일체의 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

○ 퇴직연금공단 설립준비(부칙 제2조)

- 공단설립위원회의 구성 :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위원장과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설립위원회 업무 :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 정관* 작성 및 법인 설립 등기

* 공단의 주사무소 위치는 정관으로 정함

□ 유치 근거

○ 부산 금융중심지 기반 활용

-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금융)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며 금융중심지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집적되어 금융 인프라를 갖추었음

-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자본시장 인프라에 퇴직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기능이 더해지면 부산이 자본시장 기반 자산 운용 중심지로 발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연금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금융공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퇴직연금자산과 주택자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노후 소득 보장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

○ 분산보다 집중을 추구하는 기조에 부합

-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있어서 분산보다 집중을 추구 :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전대상 예외기준을 최소화하여 지방 이전 기관을 확대하고, 분산배치를 지양하며, 지역 특화 산업 및 혁신 역량과 연계한 배치를 추진할 계획을 밝힘
- 부산은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다수의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집적된 상황이므로 퇴직연금공단도 부산에 설립되는 것이 분산보다 집중을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부합할 수 있음
-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균형 성장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공단 등의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
- 퇴직연금공단 유치는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금융중심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동남권 성장엔진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과 정합성이 높음

○ 동남권 산업 기반

- 부산 해양·물류산업과 동남권 자동차·조선·방산 등의 산업이 집적되어 있어서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투자 수요 발굴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 동남권 산업 기반을 구성하는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단 사업 관련 홍보·교육을 추진해 제도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음

○ (별론) **국내 주요 정책금융·공공금융기관의 지역 간 기능적 균형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기반 강화**

- 퇴직연금 관련 공공기관 설립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기관의 입지와 기능은 지역 균형뿐만 아니라 국가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금융중심지 간 기능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부산은 해양·선박금융과 녹색금융 등 특화금융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한국투자공사·한국산업은행 등 국가 차원의 주요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부산 금융중심지의 앵커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공금융기관의 지역 배치 논의 과정에서 **지역 간 단순한 기관 수의 균형을 넘어, 각 금융중심지의 특화 기능과 국가 금융산업 발전을 고려한 기능적 분산·연계 원칙**을 제시하고, 부산을 국가 금융중심지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참고1 퇴직연금 기금화 및 퇴직연금공단 설립 관련 입법 진행 현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2024. 11. 7. 발의, 2025. 1. 9.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발의자 : 한정애 의원 등 17인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약형과 기금형 중에서 운영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제4조의2(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의 설정)**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그 운영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하 “계약형”이라 한다)
2. 수탁법인과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하여 「신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이하 “신탁설정계약”이라 한다)하는 방법(이하 “기금형”이라 한다)

- 기금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이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하여 운용

  * 사용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적립금 운용 등을 수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대표발의)

- 2025. 7. 22. 발의, 2025. 11. 14.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발의자 : 안도걸 의원 등 16인
-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안 제2조 제6호, 제14호의2)

  * 현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 개정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제2조 제14호의 2**

“퇴직연금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에 관해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제2조 제17호**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란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조성된 공동의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3조의3(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항**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두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 2025. 7. 25. 발의, 2025. 11. 14.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발의자 : 박홍배 의원 등 12인
-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대표발의)

- 2025. 9. 23. 발의, 2025. 11. 14.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발의자 : 한창민 의원 등 10인
- **퇴직연금공단 설립 조항을 신설하는 안**(안 §12의2~8, 공단의 설립, 업무,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위원회, 감독에 관한 사항)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해 사용자가 계약형과 퇴직연금기금 중에서 운영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제4조의2(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그 운영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하 “계약형”이라 한다)
2. 제12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공단과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하여 「신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이하 “신탁설정계약”이라 한다)하는 방법(이하 “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

○ 퇴직연금공단 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 법안발의 및 소관위원회 회부('25.9.2) → 소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25.11.14) → 소위원회 회부(현재) → 상임위 → 법사위(향후)**

- 2025. 9. 1. 발의, 2025. 11. 14.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발의자 : 안호영 의원 등 10인
- 별도의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

○ 정부는 7월까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참고2**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 선언문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및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관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

노사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이하 "TF"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TF는 퇴직연금이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TF는 이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집중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번 공동선언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 Ⅰ.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1. 현행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한다.

   1.1. 기금형 퇴직연금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을 배제하고 기금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형과 병행하여 운영한다.

   1.2.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기금형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에 적용한다.
3. 기금형 퇴직연금을 다음 아래의 다양한 형태로 도입·활성화하여

사업장 및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3.1. 은행, 증권,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을 도입한다.

3.2. 복수의 특정 사용자가 연합하여 별도의 공동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그 수탁법인을 통해 소속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하는 연합형 기금을 도입한다.

3.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을 활성화한다.

3.3.1. 정부는 이에 상응하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저소득 근로자의 적립금 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이 함께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급여이므로, 이를 기금화하여 운영하는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

4.1. 가입자 이익이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그 운용에 있어 합리적인 위험통제 하에서 적정한 수익이 확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탁법인은 특정정책 수단 등 가입자이익과 무관한 목적의 수단으로 기금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4.2.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자책임을 법제화하고 내부통제 기능 및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운영 중 횡령·사기·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가입자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4.3. 정부는 수탁자책임과 이해상충 방지를 기금형 퇴직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 삼아 수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성실히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5.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과 연합형 기금을 운영하는 수탁법인은 아래와 같은 지배구조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갖추어야한다.

5.1. 기금운영의 독립성 확보, 이해상충 방지 및 수탁자책임의 명확한 확보를 위하여 기금은 독립된 수탁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5.2. 수탁법인의 기금 운영 및 운용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주체로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에서는 노사관계 등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의제를 다루지 않는다.

5.3. 수탁법인의 독립성, 대표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5.3.1. 연합형 기금 수탁법인의 이사회에는 노사가 동수로 참여해야한다.

5.3.2.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수탁법인의 이사회는 수탁법인(모회사인 금융기관과 그 계열회사를 포함)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이하 독립이사)를 과반으로 구성한다. 독립이사 중 30% 이상(최소 2명)은 가입자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5.4.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별도로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구성·운영한다. 기금운용전담기구는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금융, 투자 등 기금운용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한다.

## Ⅱ.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1. 퇴직급여 체불 예방 및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퇴직

연금 도입)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다.

1.1. 사외적립 의무는 의무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적용된다.

1.2.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결정한다.

1.3.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중도인출 및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기존과 같이 보장된다. 다만,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3. 정부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4. 사업장의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4.1. 가입자 교육은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기금운용  수탁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한다.

4.2. 규약 작성 등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br>위원장 및 위원 일동